

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!



# 성북구보건소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(취모리)

1. 서울중앙경찰서 수사과 - 6141(2015.05.08.) 및 보건위생과 - 7723 (2015. 5.12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업소에서 검사로부터“기소유예” 처분 받은 것을 근거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기에,

3.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9조 관련 [별표23] 행정 처분기준 『1. 일반기준 15호‘바목-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’정지처분 기간의 1/2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하여, 같은법 제82조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,

4. 당초 예정된 처분인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로 경감하여 이에 갈음한 과징금 3,900,000원으로 부과처분 하고자 합니다.

○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

업종	일반음식점	신고번호	2003*****
업소명	취 모 리	소재지	성북구 동선동1가 85-98
영업자	강 윤 자	주민등록번호	*****
위반내용	2015. 2. 12. 00:2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(기소유예)		
위반법조	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		
적용법조	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제82조		
행정처분	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 (3,900,000원)		
과징금 납부기간	2015. 10. 05.까지		

붙임 1. 행정처분명령서(안) 1부.

2. 행정처분의견보고서 1부.

3. 과징금산출조서 1부.

4. 불기소이유통지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. 끝.

주무관 **박현숙** 식품위생담당 **이창희** 보건위생과장 **김근선** 보건소장 전결 09/16  
**황원숙**

협조자 위생지도담당 **오세원**

시행 보건위생과-15317 ( ) 접수 ( )

우 0275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63 (하월곡동) / <https://bogunso.seongbuk.go.kr>  
전화 02-2241-6164 /전송 02-2241-6611 / 부분공개(6)